2025년도 제2차 「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」 수요조사 안내

2025. 6.

재외동포청
Overseas Koreans Agency

< 목 차 >

Ⅰ. 신청 단체 ····· 1

Ⅱ. 신청 사업 ····· 1

Ⅲ. 지원 규모 및 사업 선정 기준 ····· 3

Ⅳ. 지원 불가 사업 ····· 3

Ⅴ. 기타 ····· 4

Ⅵ. 신청방법 및 서류 제출 ····· 5

Ⅶ. 사업별 문의처 ····· 6

※ [참고 1] 상세 지원 신청 절차 ····· 7

※ [참고 2] 한인회관 등 건립 지원사업 유의사항 ····· 8

Ⅰ 신청 단체

□ 동포사회에서 활동하는 각종 동포(직능)단체

- 한인회/보훈/여성/체육/정치/조사/연구/교육/한글학교/차세대/입양/경제/과학기술/전문직종사 등

* 특정 정당 지지 및 정치적 성격의 단체, 종교 단체는 신청 불가

※ **일본지역**은 ▲**한글학교 교사 현지 연수 및 강사파견**, ▲**한인회관 등 건립 지원 사업만 신청** 가능

Ⅱ 신청 사업

□ **'25년 하반기** 재외동포단체가 거주국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 아래 **중점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사업**

지원항목	2차 중점 지원 사업
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 지원	**【동포사회 연대 강화 사업】** ○ **재외동포사회 전반의 화합과 단합, 역량 결집, 소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** ※ 연말 송년회 등 단순 친목성 위주 사업 제외 ○ **미래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신·구 세대 간 소통 및 협업을 위한 사업** - 세대간 소통증진, 주류사회 진출인사 등과 사회활동 및 경력개발에 대한 네트워크 멘토링 사업 ○ **차세대의 동포사회 참여유도를 위한** 사업 **【분야별 동포 네트워크 조사 사업】** ○ 동포사회 내 **분야별, 직능별 활동 단체 및 거주국과 대한민국과 관계된 현지 네트워크 단체 조사** 사업 ※ 동 사업 신청 단체는 조사 계획이 포함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, 향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[별첨 1] 조사 사업 양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 제출 **【민생경제 활성화 사업】** ○ 동포 소상공인 활성화, 차세대 경제인 육성 등을 위한 사업 등 **【취약계층 지원 사업】** ○ 동포사회 **소외, 취약, 불우계층 지원**사업
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 지원	**【민간외교 활동 지원 사업】** ○ **거주국 정부, 타민족 커뮤니티 등과의 교류**를 통한 한국 위상제고 사업 - 거주국 정부 주최 문화행사 공동주최 혹은 참여 사업

지원항목	2차 중점 지원 사업
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 지원	- 타민족 커뮤니티와의 문화 교류 행사 공동주최 혹은 참여 사업 ○ 거주국 **정부 제정 '한인의 날' 등과 같은 기념사업** ○ **현지인 취약계층 지원**사업 ○ 재외동포 **정치력 신장** 사업 - 동포사회 풀뿌리 운동 지원 - 재외동포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참여 활동 지원사업 - 한인 정치인(차세대) 육성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- 동포 권익신장 및 보호를 위한 이민자 정책개선 사업 ※ **미국 지역 동포단체는 정치력 신장 사업 신청시 지원 불가** '정책 공공외교 활동(정치 연관 활동)' 은 미국 외국대리인등록법(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)과 관련해 지원 불가
한글학교교사 현지 연수 및 강사파견	○ **한글학교협의회 주최 교사연수** 지원 - 한글학교협의회 부재 지역의 경우, **한글학교 연합 연수** ○ **한글학교협의회 주최 교사연수 강사파견** ※ **보조금 교부신청서 [별지 제2호 서식] 강사 파견 필요 여부/강의 분야, 주제 등 반드시 표시** ※ **파견 강사는 강의 분야, 주제 등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청에서 선정 후 고지 예정** ※ **파견 강사 관련 만족도 조사 필수 시행(만족도 조사 서식은 별도 송부 예정)** ※ **지원 불가 사항** - **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섭외 완료한 강사, 또는 기완료한 연수회의 강사 파견에 대한 비용** - **동일 지역에서 동일 강사를 반복적으로 요청하거나 특정 강사를 선정하여 요청하는 경우**
재외동포 차세대단체 활동 지원	○ 지역별 **한인 차세대 네트워크 강화**를 위한 사업 - 차세대대회(Future Leaders' Conference) 지역별 리유니언* * 이민 2세대 이상 혹은 주로 25세부터 45세까지 동포들로 구성된 차세대단체가 추진하는 네트워크 행사 ※ 차세대 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, 총 사업 소요액의 80% 이내 지원 가능
한인회관 등 건립 지원 [참고 2]	○ **한인회관 등의 시설 개보수 지원** ※ **동포단체 명의 건물만 지원 가능하며,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및 연내 완료 가능한 사업 우선 검토 예정** - 개보수 : 사용 중인 건물 시설 개선, 낙후·노후시설 정비 등
입양동포 단체지원	○ **해외입양동포 자생 단체 주최 활동 우선 지원** - 해외입양동포 및 입양동포단체 간 주요 네트워킹 행사 - 대륙별, 국가별, 지역별 입양동포 모임(컨퍼런스, 워크숍, 멘토링), 단체 창립 행사 등 - 입양동포 정체성 함양 및 모국과의 유대감 형성 사업 - 지역 내 한인사회(단체)와의 교류 또는 협력 사업 ※ 입양동포 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해, 총 사업 소요액의 80% 이내 지원

※ 지원 사업 신청 시에는 단체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합한 지원항목에 신청 요망

(예)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 : 한인회, 체육회, 여성회, 기타 직능단체 등
차세대 단체 활동 : 이민 2세대 이상 혹은 주로 25세부터 45세까지 동포들로 구성된 차세대단체
입양동포단체 활동 : 입양동포관련 단체

Ⅲ 지원 규모 및 사업 선정 기준

□ 지원 규모 : **신청사업 총 소요액의 50%** 이내

□ 아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지원사업 선정

- ㅇ 정부의 **재외동포 정책 및 중점 지원사업에 해당**하는 사업
- ㅇ 사업의 타당성 및 **동포사회 및 현지 지역사회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**
- ㅇ 과거 지원 이력이 있는 계속사업의 경우에도 **사업성과, 결과보고 충실도 등을 종합 고려**하여 지속 지원 여부 결정
- ㅇ **예산 집행계획의 적절성** 및 단체 **자조 노력**
- ㅇ 1개 단체에서 다수 사업 신청 시, 중점 지원사업 우선 검토
- ㅇ 관할 **재외공관 의견** 등

Ⅳ 지원 불가 사업

□ **(공통) 지원 불가 사항**

- ㅇ 전년도 사업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했거나 실적이 미비한 경우
- ㅇ 재외동포청의 승인 없이 당초 사업을 변경, 이월 시행한 이력이 있는 단체의 사업
- ㅇ 관할공관을 통하지 않고 재외동포청으로 개별 신청한 사업
- ㅇ 분쟁 중이거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단체가 신청한 사업
- ㅇ 사업(행사) 종료 이후 지원 신청한 경우
- ㅇ 한국 정부(중앙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)로부터 동일 사업에 지원받는 경우(중복 수급 불가)
- ㅇ 단체 운영 등을 위한 인건비 및 **경상경비 등 지원금으로 사용이 불가한 항목에 신청한 경우**

구 분	지원금 사용불가 항목
인건비	- 사업(행사)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아닌 **단체 관계자의 인건비**
운영비	- **사업(행사)과 무관한 사무용품 구입비, 식비, 간식비** 등 - 수선비, 공과금, 사무실 임차료, 시설장비 및 차량의 유지비 등 - **장비구입, 시설비, 전신전화, 전산장비, 정보화사업** 등
기타	- 사전 승인받지 않은 장학금, 시상금 및 기부금(품) - **기프트카드, 상품권, 기프티콘 등 유가증권의 구입 및 배포** - **소명되지 않은 여비, 국외출장여비,** 연구개발비, 일반용역비 * 여비는 단체 관계자의 경비로는 지출 불가하며, 초청 대상자의 여비 지급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별도 소명해야 함. 단, 연구단체는 연구개발비 또는 일반용역비 집행 가능

□ **(사업별) 지원 불가 사항**

사업명	내 용
공통	ㅇ 소식지, 주소록·달력 제작 등 ㅇ 단체 회원 간 단순 친목 도모 행사 및 연말연시 모임 등 ㅇ 소수 개인의 상업 활동 및 영리 목적의 사업 ㅇ 종교활동 또는 국내 정치 관련 사업 ㅇ 지원 요청액이 USD1,500 미만인 소액사업 등
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 지원	ㅇ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위한 사업
한인회관 등 건립지원	ㅇ 개인명의(개인소유)로 진행되는 사업 ㅇ 채무상환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 ㅇ 건물 내 자산 구입, 설치 등을 요청하는 사업 ㅇ 자체마련 재원이 총사업비의 50% 미만인 사업
한글학교 교사 현지 연수 및 강사파견	ㅇ 한국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글학교 교사연수 ㅇ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는 자체 학회지 및 학술지 발간사업 ㅇ 재외동포청의 승인 없이 단체에서 단독으로 선정하거나 반복적으로 파견을 요청하는 강사

Ⅴ 기 타

□ **정부「보조금관리법」에 적용, '25년도부터 사업 결과보고 시 보조금 집행 및 결산 내역 공시가 의무화**됨에 따라 사업 신청 시부터 예산 조달 및 집행 계획 수립 면밀 검토 후 신청서 제출

※ 보조금 집행 공시 지침은 추후 결과 보고 안내 시 별도 안내 예정

Ⅵ 신청방법 및 서류 제출

□ 신청 절차 및 일정 ※ 한국시간 기준

재외동포단체 '25.7.1.(화)~7.16.(수)	➤	재외공관 '25.7.1.(화)~7.21.(월)	➤	재외동포청 '25.7.22.(화)~
서류 작성 및 제출		서류 검토 및 공관 의견 (우선순위 포함) 작성 후 회신		제출서류 검토(공관의견 포함) 및 심의시행

※ (유의사항) 신청 기간 종료 이후 시스템 마감으로 추가 신청 및 수정·보완이 불가한바, **반드시 신청서 작성(저장) 후 7.16.(수)까지 온라인 및 관할 공관에 제출 완료** 요망

□ 신청 방법 [참고 1]

○ 온라인 지원 신청 시스템(www.korean.net)을 통해 신청서 제출

< 온라인 신청 절차 안내>

1. **(회원가입)** www.korean.net 접속 ➜ 개인회원가입 ➜ 단체회원가입 ➜ 재외동포청 승인 (2일 이내 메일 통보)
   ☞ 기 가입단체는 사용 중인 ID/PW 사용
   ☞ 한글학교 및 한글학교협의회는 반드시 재외동포청 기 제공 ID/PW 사용
2. **(신청 절차)** 코리안넷 접속 ➜ 단체 ID/PW 로그인 ➜ **재외동포 지원 ➜ 재외동포 사업 ➜ 2025년 지원사업 수요조사 ➜ 해당 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 ➜ 저장 및 제출**(제출기한 내 수정 가능하나, 제출 후에는 수정 불가) ➜ **신청서 공관 제출**((붙임자료 포함해 작성한 신청서를 인쇄하고, 서명 후 제출)

* 상세 내용은 붙임_온라인시스템 이용 방법(단체) 참조
* 온라인 지원신청 시스템 문의 : (유선) 02-3415-0144 (한국시간 09:00~18:00)
(이메일) pms01@okocc.or.kr
* 코리안넷 개인회원 및 단체회원 가입문의 : korean_master@korean.net

□ 제출 서류

○ **(필수) 공통 제출 서류 (온라인 양식 입력)**

- 지원금 신청서
- 사업계획서
- 수지예산서
- 단체현황조사서

* 붙임 : △정관, △단체연혁, △임원현황, △사업 및 활동 실적 등 단체소개서, △법인(단체) 등록증 (등록단체인 경우 제출)

- 기타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(요청 시 제출)

○ **(추가) 사업별 제출 서류**

사업명	추가 제출 서류
한인회관 등 건립지원	○ 공사비 산정내역서(견적서), 공사계약 관련 서류(해당사항 있는 경우), 공사 인허가 관련 서류(거주국 내 인허가 필요시) ○ 단체 현재 보유액 관련 증빙자료(**은행 잔고 증명서(필수)**, 거주국 정부보조금 교부 확인서 등) ○ 부족액 조달 계획 관련 증빙서류(기부약정서 등) **※ 구두 기부 약정 내용 등 실행 여부가 불분명한 계획은 불인정** ○ 단체 정관 ○ 사업추진 계획서(공정표 등 세부추진 일정 포함) ○ 건물 도면 및 사진(내외부, 주변) 및 대상 건물 시가지도(한인사회 주거지 등)

□ 신청서 작성 시 유의 사항

○ 다수의 사업은 **각 건별로 신청**
※ 1개 단체가 다수의 사업을 지원 신청할 경우, 반드시 사업건 별로 작성

○ 지원신청 시 사업목적, 기대효과 외 **사업 내용 및 예산 지원 필요성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**

Ⅶ 사업별 문의처

사업명	문의처
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 지원	재외동포협력총괄과 임소연 사무관 032-585-3201 / lsyeon24@korea.kr
재외동포 차세대 단체 활동 지원	차세대동포과 김기홍 주무관 032-585-3218 / kkh7641@korea.kr
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 지원	재외동포협력총괄과 임소연 사무관 032-585-3201 / lsyeon24@korea.kr
한인회관 등 건립지원	재외동포협력총괄과 문소희 주무관 032-585-3203 / shmoon22@korea.kr
입양동포 단체 지원	차세대동포과 변승우 주무관 032-585-3216 / swbyun23@korea.kr
한글학교 교사 현지 연수 및 강사파견	동포교육문화지원과 남현숙 주무관 032-585-3255 / hsnam13@mofa.go.kr

참고 1 상세 지원 신청 절차

동포단체	**신청서 작성**	지원신청서 온라인 작성 (http://www.korean.net)
	⇩	
	신청서 공관에 제출 (수요조사 기간 내)	신청서 출력(붙임자료 포함) 후, **단체장 서명 후 관할공관에 제출** * **가능한 스캔 파일로 제출** (부득이한 경우 수기 작성 제출)
재외공관	**신청서 접수 및 검토**	신청서 접수 및 검토
	⇩	
	공관 의견 작성	공관 의견 및 지원 우선순위 작성
	⇩	
	총괄표 전문 발송 (공관 의견 제출 기간 내)	신청 사업 총괄표 및 공관 의견, 지원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동포청으로 전문 발송
재외동포청	**심 의**	'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' 심의위원회 개최
	⇩	
	심의 결과 전문 통보 및 지원금 송금	'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'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안내(공관별) 지원금 송금
동포단체	**결과보고서 제출** (사업 종료 60일 이내)	**(재외동포단체)** 사업 종료 후, 6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관할 공관을 통해 재외동포청에 제출 ➜ **(공관)** 접수된 결과보고서와 '결과보고서 총괄표'를 재외동포청으로 제출 * 결과보고서 지연 혹은 미제출 시, 향후 지원에서 보조금이 삭감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으므로 제출 기한 준수 유의

참고 2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사업 유의사항

□ 유의사항

- ○ 단체 명의로 진행되는 사업만 지원신청 가능(개인 명의 사업 불가)
- ○ 재외동포청은 지원 심의 전·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○ 사업 진척이 부진한 경우, 지원을 결정하였더라도 추후 지원 취소 가능
- ○ 지원금 수령 시 추후 단체운영 정관에 건물 임의 처분 방지 조항 **"건물에 대한 재산권 처분 결정 시, 관할공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"** 를 반드시 포함해 제출해야 함
- ○ 지원금은 사업 진척도를 평가, **사업 완료가 확실시 된다고 판단되는 시점(사업 추진 마지막 단계)에 단체에 전달**되므로, 신청 시 이 점 유의해 현실성 있는 재원 확보 계획 수립 요망